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BdvPrint.do?ancYnChk=0
1/1

2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2) 대상사업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3) 매출 기준

○ **(수익형)**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공익형)**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공익형(비수익형) 사업단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무료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무료집수리, 무료 빨래방 등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지자체 위탁사업 등 수행 시 내일키움장려금 등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용역 수익금 적정 지급 필요
- 매출이 발생하면 기관의 매출정산방식(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가능

(4) 사업추진방법

① 사업규모

○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2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2022년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2) 대상사업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3) 매출 기준

○ **(수익형)**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공익형)**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공익형(비수익형) 사업단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무료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무료집수리, 무료 빨래방 등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지자체 위탁사업 등 수행 시 내일키움장려금 등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용역 수익금 적정 지급 필요
- 매출이 발생하면 기관의 매출정산방식(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가능

(4) 사업추진방법

① 사업규모

○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3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총 사업비 : 인건비+사업비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공익형(비수익형) 사회서비스 사업단'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매출이 발생하면 기관의 매출정산방식(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참여자의 인센티브 지급 가능
    * 무료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무료집수리, 무료 빨래방 등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업종. (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은 3년까지 가능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2) 대상사업 및 규모

-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80 : 20」이며, 인건비는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3) 사업추진방법

-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이외의 사항은 시장진입형의 전담관리인력과 동일)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연간 사업실시기간은 12개월이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3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총 사업비 : 인건비+사업비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공익형(비수익형) 사회서비스 사업단'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매출이 발생하면 기관의 매출정산방식(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참여자의 인센티브 지급 가능
    * 무료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무료집수리, 무료빨래방 등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업종. (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은 3년까지 가능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2) 대상사업 및 규모

-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80 : 20」이며, 인건비는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3) 사업추진방법

-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이외의 사항은 시장진입형의 전담관리인력과 동일)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연간 사업실시기간은 12개월이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되며 기간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함
  - 단,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등을 위해 비수익형으로 추진되는 '공익형 사회서비스 사업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단, 해당 시·군·구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시, 용역 수익금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위한 내일키움장려금 등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사용되므로 적정 지급 필요

- 지역의 자활사업 및 복지서비스 여건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되, 사업의 추진 여부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 이외의 세부추진방법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준용

- 전담관리자
  - 시장진입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 역할 : 참여자 출·퇴근관리, 사업장 현장감독 등 해당 자활사업에 대한 전담관리역할 수행
  - 1일 급여 : 시장진입형 인건비(실비포함)+전담관리수당 4천원

④ 사업의 시행 및 관리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되며 기간 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함
  - 사업단의 일부가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한 경우 자활기업 창업일로부터 사업추진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다시 시작하는 사업단은 기존 사업단의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음)

3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총 사업비 : 인건비+사업비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공익형(비수익형) 사회서비스 사업단'은 매출액 기준 적용하지 않음
    * 무료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무료집수리, 무료빨래방 등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업종. (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은 3년까지 가능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2) 대상사업 및 규모

-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80 : 20」이며, 인건비는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3) 사업추진방법

-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이외의 사항은 시장진입형의 전담관리인력과 동일)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연간 사업실시기간은 12개월이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되며 기간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함
  - 단,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등을 위해 비수익형으로 추진되는 '공익형 사회서비스 사업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단, 해당 시군구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이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시, 용역 수익금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자금, 내일키움장려금 등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사용되므로 적정 지급 필요

- 지역의 자활사업 및 복지서비스 여건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되, 사업의 추진여부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 이외의 세부추진방법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준용

(3) 사업추진방법

-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이외의 사항은 시장진입형의 전담관리인력과 동일)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연간 사업실시기간은 12개월이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되며 기간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함
  - 단, 향후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단, 해당 시군구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역의 자활사업 및 복지서비스 여건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되, 사업의 추진 여부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 이외의 세부추진방법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준용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사업수행기관에서 정식 사업단을 설치·운영 이전에 사업운영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6개월 이내)로 운영하는 사업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자

(2) 대상사업 및 규모

- 시범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전체 참여자의 15% 이내에서 운영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70 : 30」
- 시범사업단 참여자 급여단가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급여단가를 적용**

(3) 사업추진방법

- 지역자활센터는 시범사업단 수 및 참여자 수 및 예산규모의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시·군·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외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범사업단 운영 이후 시·군·구에 사후보고
  - 사전 승인 사항 : 시범사업단 수 및 참여자 수, 시범사업단 지원 예산 규모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되며 기간 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함
- 사업단의 일부가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한 경우 자활기업 창업일로부터 사업추진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다시 시작하는 사업단은 기존 사업단의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음)

3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총 사업비 : 인건비+사업비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은 매출액 기준 10%를 적용하지 않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 : 10으로 설정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으로 한정하되, 시군구의 결정시 타 업종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2) 대상사업 및 규모

- 주 5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하되, 예산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80 : 20」이며, 인건비는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함